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3056-1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19일

제 안 자:정혜영의원

1. 수정이유

○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거나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개최 시 공정성 및 사전·사후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동일 행사 진행 시 보다 양질의 행사를 추 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제2조제1항에 신설된 단서 조항 삭제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
 "문화행사"라 함은 하 남시(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 포함) 및 「지 	1	1
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		
률」(이하"법"이라 한		
다)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		
이 주최 및 주관하는		
모든 문화행사로서 시 민여가 문화활성화, 시		
민화합 등을 목적으로	<u>개최되</u>	
<u>개최되는</u> 행사를 말한	며, 문학, 시각예술, 공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연예술, 전통예술, 복합	
	예술 등 개인이나 집단	
	의 창의적 표현활동과	
	관련된 프로그램으로	
	<u> 구성된 모든</u>	
	<u>다만, 다음 각 목</u>	<u><단서 삭제></u>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	는 경우에는 문화행사	
	로 보지 아니한다.	
<u><신 설></u>	가. 각종 경연대회, 기념	<u><삭 제></u>
	<u>식 등 특정인 및 단</u>	
	체만 참여하는 행	
	<u>사</u>	

<u><신 설></u>	나. 경로잔치 등 단순한	<u><삭 제></u>
	시민 위안 행사	
<u> <신 설></u>	다. 그 밖에 특정행사	<u><삭 제></u>
	개최를 위해 문화	
	<u>행사가 부수적으로</u> 일부 포함된 행사	
0 (1) 7)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